



: 2017-07-31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2193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
행사, 사기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대경(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L(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3457, 378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견적서를 변작·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횡령죄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16. 사기죄 및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

 판사 김승현 _____

 판사 백규재 _____